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도모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에 따라 방재단장 선출 방법 및 방재단 소집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9조)
- 나.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단원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9조, 제11조)
- 다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신설 등 별지 서식 정비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6조”를 “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”로, “제65조의 규정”을 “제65조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”를 “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”로,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”를 “시장이 임명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중”을 “중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단,”을 “다만,”으로, “및”을 “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방재단”을 “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⑧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(이하 “대표”라 한다)는 해당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원 중에서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출 할”을 “제출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가 되며, 구미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이 된다”를 “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단장, 부단장, 간사 및 읍·면·동 대표(이하 “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.

제6조제1호 중 “단원이 사망 또는”을 “단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역자율방재단”을 “방재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제7조제3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맡는다”를 “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단장”을 “회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세분화 할”을 “세분화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활동을 한”을 “활동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회이상”을 “1회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9월말까지 다음해”를 “9월 말까지 다음 해”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식대,여비”를 “식대, 여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“단,”을 “다만,”으로, “제외”를 “제외한다.”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연1회”를 “연 1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해 연도 “민방위교육 추진 지침””을 “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필요시”를 “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2-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별지 제1-2호서식 및 별지 제1-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임명장

주소
성명

귀하를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
임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구미시장

[별지 제2호서식]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개인>

등록번호 : _____

성명	(남 · 여)	연령		
주소			일반전화	
			휴대전화	
자격증 또는 기능		운전가능여부 (면허종류)		
재난 현장경험	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			
희망 활동내용	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			
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○ 목적 :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○ 항목 : 신청인 성명, 연령, 주소, 전화번호(핸드폰), 자격증 ○ 보유 및 이용기간 :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위촉기간 까지 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동의 ☐ 미동의 ☐				
[특이사항] ※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				

상기 본인은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
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가입희망자 (인)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-2호서식]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단체>

등록번호 : _____

단 체 명			대 표 자	(휴대전화)	
주 소				대표전화	
담 당 자	(휴대전화)		부서명		
인 원	남 명	여 명	총인원	명	
장 비	장비명(규격) 대	장비명(규격) 대	장비명(규격) 대	장비명(규격) 대	
지원가능	남 명 여 명	장비(규격) 대	장비(규격) 대	장비(규격) 대	
전문분야	※ 단체의 성격 정리 예) 인명구조,이재민구조,장비지원,차량지원.등 구체적으로정리				
활동희망분야	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				
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					
○ 목적 :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					
○ 항목 : 신청인 성명, 연령, 주소, 전화번호(핸드폰), 자격증					
○ 보유 및 이용기간 :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위촉기간 까지					
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.					
동의 ☐ 미동의 ☐					
[특이사항]					
(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					

상기 본 단체는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 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 니다.

년 월 일

대 표 (인)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6호서식]

출 입 증

출 입 증	
사진 3×4	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원	

지역자율방재단원증	
NO. 000	혈액형 O(RH+)형
성명 :	
생년월일 :	
소속 :	
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※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
구미시장	

구미시장 직인 사용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,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적) ----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----- ----- 제65조----- -----.
제2조(설치)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은 구미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에 설치한다.	제2조(설치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한다.
제4조(조직) ① (생략) ② 단장과 부단장은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,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③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. ④ (생략)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	제4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----- ----- 시장이 임명한다. ③ ----- 중에서 ----- --.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

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단,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

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
⑦ (생략)

⑧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(이하 “대표”라 한다) 해당 읍·면·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.

제5조(임원의 임무 등)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.

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⑤ 읍·면·동 대표는 읍·면·

----- . 단
만, -----

----- 또는 -----
-----.

⑥ -----
----- 읍·
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-----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(이하 “대표”라 한다)는 해당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원 중에서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한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5조(임원의 임무 등)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-----

-- 제출할 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동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가 되
며, 구미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
회원이 된다.

⑥ 단장, 간사, 대표의 임기는 3
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
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
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해임) 단원 등이 다음과 같
은 사유로 해임사유로 발생한
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
할 수 있다.

1.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
분명한 경우
2. ~ 4. (생략)
5.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
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
경우

제7조(지역자율방재 협의회) ①
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
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
·조정을 위하여 구미시 지역자
율방재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
한다)를 구성한다.

-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.

⑥ 단장, 부단장, 간사 및 읍·
면·동 대표(이하 “임원”이라
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다만,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
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
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
로 한다.

제6조(해임) 단장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해당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단원의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-----

--

제7조(지역자율방재 협의회) ①
방재단-----

-----.

② (생략)

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<신설>

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.

⑤ (생략)

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8조(임무) ① (생략)

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~ 10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.

제9조(소집)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④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----- 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회장-----

-----.

제8조(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다음 각 호와 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세분화할 -----.

제9조(소집)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

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
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
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
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. 다만,
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
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 등) ① 단원이 방재
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
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
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
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
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
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
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
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
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

⑦ (생 략)

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

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
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
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0조(운영 등) ① -----
----- 활동한 -

-----.

② -----

-- 1회 이상 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9월 말까지 다음
해-----
-- 따라 -----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 범위-----

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,여비, 유류대 등 필수 경비

2.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단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

3. 4. (생략)

제11조(금지행위)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
4.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12조(출입증 발급) ① (생략)

-----.

1. -----

- 식대, 여비-----
--

2. -----

--. 다만, -----

----- 제외한다.

3.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2조(출입증 발급) ① (현행과

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<u>의거</u> 시장이 발급한다. 제13조(교육) ① (생 략) ② 단장은 교육시간 중 <u>연1회</u> 4 시간 이상 전문기관(민간기관 포함)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 한 때에는 <u>당해 연도 “민방위교 육 추진 지침”</u>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제15조(중앙지원단 자문 등)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·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<u>필 요시</u>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	같음) ② ----- <u>따라</u> -----. 제13조(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연 1회</u> 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해당연도 민방위 업무</u> <u>지침</u>----- -----. 제15조(중앙지원단 자문 등) ---- ----- ----- <u>필</u> <u>요한 경우</u> ----- -----.
-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

제60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 ① ~ ② (생략)

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"지역자율방재단장"이라 한다)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(互選)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1조(소집)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(생략)

1. ~ 6. (생략)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소관 실·과		안전재난과
입 안 자	담 당 관	류 형 욱
	담 당	강 창 조
	담 당 자	김 한 수 (480-6743)